### 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3-1103호

「도로법 시행령」일부개정(안)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3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

# 「도로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'드라이브 스루' 매장 설치 시 도로관 리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「도 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협의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도로관리청이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점용허가를 할 때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해야 할 시설을 구체화(안 제54조제6항)

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9월 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(참조 : 도로관리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(전화: (044-201-3914, 3917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(http:/www.molit.go.kr) 정보마당/법령정보/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정 사유
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  - 1) 전자우편(이메일): atomee@korea.kr
  - 2) 주소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
  - 3) 전화 : 044-201-3914 / 3917 / 팩스 : 044-201-5591